



서대문구



수신자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해빙기 대비』 기존무허가건물 안전관리 안내

1.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 관리) 하신 기존무허가건물은 노후 되고, 건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위해 요소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가오는 해빙기철을 맞이하여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기존 무허가 건물 안전점검 (건물, 축대등)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험요소 사전예방

- 1) 건축물, 담장, 축대, 지붕 등 전반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
- 2) 위험부분 발견 시 신속한 보강으로 재해의 사전예방

나. 사전점검결과 위험요소 발견 시 개·보수 전 반드시 신고 후 조치

- 1) 외벽의 치장, 사이벽 및 기둥수리, 지붕기와 판자널 수리
- 2) 1m 미만의 차양 설치, 2m 미만의 담장 및 옹벽 축조
- 3) 30㎡ 미만의 벽돌조 외벽 및 지붕구조체 수리
- 4) 건물의 외부 타일교체

※ 신고대상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수리할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기존무허가건물 대장에서 삭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되니 개·보수 전에 반드시 우리구청 주택과(☎ 330-8996)에 서면신고 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기존무허가건물 안전사고 대비 안내문 1부. 끝.

서대문구청장

주무관

이종우

주택정비팀장

유재훈

주택과장

송광덕

환경도시국장

02/26

오제성

협조자

시행 주택과-5440

(

) 접수

(

)

우 120-1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65

/ <http://www.sdm.go.kr>

전화 330-8996 /전송 330-1634

/ ysu112@sdm.go.kr

/ 대시민공개